



학습 목차

차시	차시명	주요 훈련내용	
1	근·골격계질환 및 금연	1. 근·골격계질환 개요 2. 근·골격계질환 예방 공학적 개선사례 3. 근·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예방 4. 금연	
2	보호구의 종류와 선택	1. 보호구 일반 사항 2.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	
3	안전보건표지	1.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2. 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 3. 사업장 감독	
	최종평가(기말고사)	선다형 10문항 출제	



중점 학습내용!

- 1 근·골격계질환 개요
- 2) 근·골격계질환 예방 공학적 개선사례
- 3 근·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예방



근·골격계질환 개요

1. 근·골격계질환 개요

- 1) 용어
- ① 골절: 뼈가 부러지거나 파괴된 상태
- ② 탈구: 뼈가 관절 속에서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
- ③ 염좌: 인대 등의 관절 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
- 2) 근·골격계질환이란?
- ① 근·골격계 부위에 생기는 질환
- ②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누적외상성질환
- ③ 반복적인 작업동작으로 인한 극히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로서 허리, 목, 어깨, 팔, 손목 등의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
- ※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: 직업의 만족도, 근무조건의 만족도, 직업의 안전성, 상사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, 업무스트레스, 기타 정신·심리 상태
- 3) 근·골격계질환의 특성
- 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질병이 유발됨
- 개인적 요인: 성, 연령, 유전, 생활습관, 체력, 면역력, 흡연, 가사노동 등
- 심인성 요인 : 스트레스
- ② 원인의 근원적 제거가 어려움
- 물리적, 정신적 요인 등 근원적 제거가 어려움
- 지속적 관리로 질환발생예방 및 최소화
- ③ 근로자의 자기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함
- 예방운동, 체력증진 등 자기관리 능력의 강화

근·골격계질환 예방 공학적 개선사례

1. 근·골격계질환 예방 공학적 개선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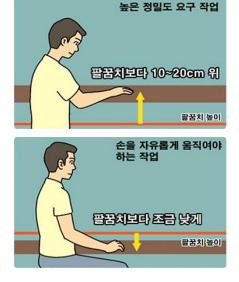
1) 용어

- ① 공학적 개선: 공구·장비, 작업장, 포장, 부품, 제품의 재배열, 수정, 재설계, 교체
- ② 관리적 개선: 작업의 다양성 제공, 작업일정과 작업속도 조절, 회복시간 제공, 작업습관 변화, 작업공간· 공구·장비 의 주기적인 청소와 유지보수, 작업자의 적정배치, 직장체조 강화

2) 중량물 취급 작업

- ① 중량물의 무게중심을 찾아 가깝게 다가선 후 한쪽 발은 물품 쪽에, 다른 쪽 발은 2~3보 옆뒤쪽으로 위치
- ② 무릎과 정강이, 넓적다리는 90° 이상으로 유지하고, 몸을 중량물에 접근시켜 정면에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림
- ③ 중량물을 운반 시 최단거리를 선택하고, 여러 차례 반복운반, 중계운반 금지
- ④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 금지
- ⑤ 어깨 높이보다 낮은 위치로 유지하며 중량물을 운반
- ⑥ 적재된 중량물을 운반 시 중간이나 밑에서 뽑지 말고, 위에서부터 차례로 운반
- ⑦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지를 게시
- ⑧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, 증상, 대처요령, 올바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해 교육 실시
- ⑨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 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
- 설비·작업공정·작업량·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
- 작업시간·작업자세·작업방법 등 작업조건
-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

3) 작업대 높이







근·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예방

1. 근·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예방

- 1) 근 골격계질환의 종류 및 증상
- ① 근막통증후군
- 발병원인: 목이나 어깨의 과다 사용, 굽히는 자세
- 증상: 근육의 통증, 움직임 둔화
- ② 요통
- 발병원인 : 중량물을 옮기는 자세,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
- 증상 :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, 허리 부위에 염좌 발생(→ 통증 및 감각마비)
- ③ 수근관증후군
- 발병원인 :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이나 손목을 굽히는 자세
- 증상: 손가락 저림, 감각저하
- ④ 내·외상 과염
- 발병원인: 손목과 손가락의 과다한 사용
- 증상: 팔꿈치 내 바깥쪽에 통증
- ⑤ 수완진동증후군
- 발병원인 : 진동하는 공구 사용
- 증상: 손가락 혈관수축, 감각마비(→ 손이 하얗게 변색)
- ⑥ 기타
- 회전근개 건염(충돌 증후군, 극상건 파열 등을 포함)
- De Quervain's disease(데꾸방씨 병)
- 결절종
- 2) 일반적인 작업 관련 근·골격계질환의 예방
- ① 작업장 관리
- ② 작업관리
- ③ 건강관리
- ④ 작업환경
- ⑤ 교육
- ⑥ 기타: 업무요구도, 업무조절 권한, 가정이나 직장 등의 정신적·물리적 배려
- ⑦ 스트레칭

4 금연

1. 금연

- 1) 흡연이 미치는 영향
- ① 청산가리수소 ② 추한 외모, 악취 ③ 주변 사람들의 불편 ④ 빠른 피부 노화 ⑤ 폐암 원인의 90%
- ⑥ 탈모 과속화 ⑦ 신생아 사망 ⑧ 풍치, 치주염, 치아손상 ⑨ 입냄새
- 2) 금연의 좋은 영향
- ① 컨디션 상승 ② 깨끗한 사람 ③ 깨끗한 치아 ④ 자신감/ 인내심 상승 ⑤ 잔병면역 향상 ⑥ 고운 피부
- ⑦ 폐활량 상승 ⑧ 담뱃값 절약
- 3) 구체적인 금연법
- ① 흡연량 줄이기: 하루에 한 개비씩 줄여나가기
- ② 흡연시간 늦추기: 매일 첫 번째 담배를 피우는 시간을 늦춤
- ③ 흡연간격 늘리기 : 일정한 시간 간격을 정해놓고 흡연
- ④ 니코틴 함량 낮추기: 피우던 담배보다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로 바꿈
- 4) 흡연 욕구 시 대처방법
- ① 아침에 기상 후 이를 닦거나 물을 마심
- ② 식사 후 바로 이를 닦거나, 산책 등 다른 일을 한다.
- ③ 운전 중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무설탕 껌을 씹거나 음악을 듣는다.
- ④ 술자리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옆에 앉는다.



중점 학습내용!

- 1 보호구 일반사항
- 2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

보호구 일반사항

1. 보호구 일반사항

- 1) 보호구의 정의 및 필요성
 - 작업자가 사용하는 보호구란 근로자가 신체에 직접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·기계적·화학적 위험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
- 2) 보호구의 구비조건
- ① 착용이 간편할 것
- ②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
- ③ 유해·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
- ④ 재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
- ⑤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
- ⑥ 외양과 외관의 양호할 것
- 3) 보호구의 선택
- ① 보호구 종류
- 호흡용 보호구 : 방진마스크, 방독마스크, 송기마스크, 산소호흡기, 공기호흡기
- 청력 보호구 : 귀마개, 귀덮개
- 안구 및 시력보호구 : 전안면 보호구, 시력보호 안경
- 안전화, 안전장갑
- 보호복 : 방열복, 방열면, 전신 보호복, 부분 보호복
- 피부보호크림

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

1.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

- 1) 머리 보호구(안전모)
- ① 중량물의 비래, 충돌 또는 근로자 자신이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
- ② 2m 이상의 고소작업에 사용하며 전기작업 시 착용
- ③ 종류별 사용구분
- AB: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
- AE :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, 머리부위 감전에 내전압성 의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것
- ABE :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,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
- ④ 선정기준, 사용방법 및 관리
-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
-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매도록 지도
- 자기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 조절
- 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폐기

2) 눈 및 안면 보호구

- ① 보안경 : 분진, 침(Chip), 약품 등 비래하는 위험과 유해광선을 차단시켜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
- ② 보안면 : 용접·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강렬한 유해광선 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 시 불꽃 등에 의한 화상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

3) 방음보호구

- ① 소음수준이 85~115dB일 때는 귀마개, 110~120dB 이상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
- ② 활동이 많은 작업인 경우에는 귀마개,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귀덮개 착용
- ③ 중이염 등 귀가 아플 때에는 귀덮개 착용
- ④ EP-1형은 화가 가능한 고음만을 차단시키므로 화가 필요한 작업에 착용

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 (계속)

1.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 (계속)

4) 방진마스크

① 석탄, 돌, 면, 기타 일반분진과 용접작업, 주물작업, 금속용융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

② 선정기준

- 분진포집효율은 높고 흡기·배기 저항이 낮은 것
-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은 것
- 안면 밀착성이 좋아 기밀이 잘 유지되는 것
- 마스크 내부에 호흡에 의한 습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
- 안면 접촉부위가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 것
- 작업의 내용에 적합한 방진마스크 종류의 선정

5) 방독마스크

① 유기용제, 황산·염산 등의 산, 염소, 암모니아, 그 밖의 유독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가스나 증기로부터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

② 형태 및 구조

격리식	전면형	- 구성 : 정화통, 연결관, 흡기밸브, 안면부, 배기밸브 및 머리끈 -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 - 배기: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 -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
	반면형	- 구성 : 정화통, 연결관, 흡기밸브, 안면부, 배기밸브 및 머리끈 -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 - 배기 :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 - 코와 입 부분을 덮는 구조
직결식	전면형	- 구성 : 정화통, 흡기밸브, 안면부, 배기밸브 및 머리끈 -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 - 배기 :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 - 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태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
	반면형	- 구성 : 정화통, 흡기밸브, 안면부, 배기밸브 및 머리끈 -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 - 배기 :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 - 안면부와 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로 코 및 입 부분을 덮는 구조

6) 송기마스크

- 산소농도가 18% 미만이거나 유독가스가 노출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것



중점 학습내용!

- 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
- 2 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
- 3 사업장 감독

사업장 안전보건관리

1. 사업장 안전보건관리

- 1)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
- ① 산업재해 :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·설비·원재료·가스·증기·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
- ② 산업안전보건관리 :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하고,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
- 2) 안전보건 관련 서류 작성 및 보존
- ① 안전보건 관련 서류 보존
-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(산업재해 발생기록,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)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함
-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 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음
- ②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

보존기간	보존서류		서류 목록		
3년	산업재해 발생 서류	모든 재해	① 산업재해 기록서류(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,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,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, 재해발생 방지계획 포함)		
		3일 이상 휴업재해	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		
5년	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		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※ 발암성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		
	건강진단에 관한 서류		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		
	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		① 안전보건교육일지 ② 교육참석자 명단		

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

1. 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

- 1) 개인용 보호구 지급/착용
- ① 보호구: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기구나 장치
- ②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
- 안전모: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
- 안전대: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
- 안전화: 물체의 낙하·충격, 물체에 끼임, 감전·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
- 보안경: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
- 보안면: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
- 절연용 보호구 :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
- 방열복: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
- 방진마스크: 선창작업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
- 방한모·방한복·방한화·방한장갑: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

2) 안전보건 표지 부착

- ① 표지의 설치기준
-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,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, 부착
-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, 부착
-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
- ②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
-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·설치 및 사용
- 임의로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됨
-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
- 부착된 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
- 내용 준수를 생활화 하며, 필요한 사항은 교육 실시
- 주기적으로 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유무 등을 점검
- 유해·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, 적절한 안전보건 표지를 교체 설치

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 (계속)

1. 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 (계속)

-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
- 금지표지

101 출입금지	102 보행금지	103 차량통행금지	104 사용금지	105 탑승금지
106 금연	107 화기금지	108 물체이동금지		

- 경고표지





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 (계속)

1. 안전보건관련 기구 관리 (계속)

-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(계속)
- 지시표지

301	302	303	304	305
보안경 착용	방독마스크 착용	방진마스크 착용	보안면 착용	안전모 착용
306	307	308	309	
귀마개 착용	안전화 착용	안전장갑 착용	안전복 착용	
			(V)	

- 안내표지

401 녹십자 표지	402 응급구호 표지	403 들것	404 세안장치	405 비상용 기구
\oplus	+	*	★	비상용 기구
406 비상구	407 좌측비상구	408 우측비상구		
* * * * * * * * * *	₹ -	₹ → ■		

3)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

- ① 사업주 조치사항
-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
-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는 즉시 수리,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
- ② 근로자 준수사항
-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함
-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

사업장 감독

1. 사업장 감독

- 1)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
- 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·기구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, 기타 안전보건 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
- ② 사법처리가 되는 경우
-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 시
- 사업장 관계자 조사 → 입건(범죄인지보고) → 피의자신문 → 사건을 검찰에 송치
- ③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
- 산업재해발생 미보고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 시
- 2)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
- ①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,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
- ② 과태료 부과 대상
-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
-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
- ③ 과태료 부과 절차
- 과태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/징수
-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, 확인
-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
- ④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
-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